

이사회 규정

제정 2011.06.23

개정 2019.03.29

개정 2020.03.09

개정 2021.03.29

개정 2021.11.19

개정 2024.09.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다우기술(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로 한다.

② 의장이 유고 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 또는 부사장, 전무, 상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 회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제 5 조 제 1 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소집한다. 그러나 제 5 조 제 1 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유고 시에는 제 5 조 제 2 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 또는 감사는 제 5 조 제 1 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제 1 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 9 조(소집지) 이사회는 회사의 본점 또는 의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제 10 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 398 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이사회 결의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1 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1)-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금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7)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자산 10% 이상)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8)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9)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10)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2)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 (13) 현금 · 주식배당 결정
-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15) 이사, 감사의 보수
- (16)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 (17) 법정준비금의 감액
- (18)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 (3) 연간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 (4) 경영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경영성과의 평가
- (5)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6) 공동대표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10)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 (11)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 (12) 지점,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 (13) 간이주식교환,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주식교환,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 등의 결정
-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15)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직전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5% 이상의 투자와 자산의 취득 및 처분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3) 결손의 처분
- (4) 중요시설 및 건물의 신설과 개폐
- (5) 신주의 발행
-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7) 준비금의 자본전입
- (8) 전환사채의 발행
-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10) 직전사업연도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5% 이상의 차입과 보증/담보제공 행위
- (11)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 (1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 (13) 자기주식의 소각
- (14)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거래 (별첨 참조)

4. 이사에 관한 사항

- (1) 상법 제 398 조 규정에 의한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
- (2) 상법 제 397 조의 2 규정에 의한 이사의 회사 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 (3) 상법 제 397 조 규정에 의한 경업승인

5. 기 타

-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 (3) 1 억원 이상의 출연 결정

(4)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제 5 조 제 1 항의 이사회에서 선임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기별 경영성과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4.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2 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3 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의 2(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4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6 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임명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제 17 조(이사회 평가) 이사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이사회는 그 결의로 이사회, 각 위원회 및 사외이사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8 조(사외이사 지원 등)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임직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년 6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0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3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 년 11 월 19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 년 9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특수관계인과의 대규모 거래의 이사회 상정기준]

구분	유형	이사회 상정기준
자금거래	가지급, 대여, 차입, 수증, 채무면제 등	계열사와의 거래 건별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예·적금, 수익증권, 증권 예탁금 입금 등	건당 50 억원 이상 거래에 한하여 분기별 상정
상품 · 용역 거래 (매입/매출 포함)	분기별 거래금액 합계	동일 상대방과의 분기별 거래금액 50 억원 이상
	계약 체결	건별 계약금액 50 억원 이상
유가증권 거래	주식 · 회사채 등	건별 거래금액 50 억원 이상
담보제공 거래	보증 · 담보제공 등	건별 보증·담보 한도액 50 억원 이상
부동산 거래	부동산 매매 · 임대차 등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 x 이자율) 금액 50 억원 이상
기타 자산 거래	자산 양수도, 기술 이전, 상표권 사용 등	건별 거래금액 50 억원 이상

주) 최대주주인 (주)다우데이타와의 거래는 상기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건별 이사회 개최